

## ●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6-141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결정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년 07월 07일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

###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

1.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
2. 근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처분명(종료일)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임○이	1999.06.18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(2026.06.16.)	①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② 종료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 (3년간 재참여 제한)	폐문부재 연락두절	광주 서구

4. 공고기간: 2026.07.07. ~ 2026.07.21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한미영(Tel. 062-609-861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